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 어미숙 소유물건(2025타경507873)

의뢰인 :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상규

감정서번호 : YS20250324-1-0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연송감정평가사사무소

TEL. 010-9459-0830 FAX. 0505-182-3145

(토지) 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김동열

(인)

감정평가액	팔천칠백삼십칠만육천원정 (₩87,376,000.-)					
의뢰인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상규		감정평가 목적		경매	
제출처	인천지방법원 경매9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어미숙 (2025타경507873)		감정평가조건		-	
물건목록 표시근거	귀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5. 03. 30		2025. 03. 30	2025. 03. 31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별	면적 또는 수량(m ²)	종별	면적 또는 수량(m ²)	단가	금액
	토지	254	토지	254	344,000	87,376,000
		이	하	여	백	
합계						₩87,376,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인천광역시 중구 덕교동	638	전	자연녹지지역	254	254	344,000	87,376,000	
합 계								₩87,376,000.-	
				이	하	여	백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I.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인천광역시 중구 덕교동 소재 '용유역'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인천지방법원의 경매 진행을 위한 감정평가 건임.

II. 감정평가의 기준 및 감정평가조건

1. 감정평가의 기준 및 기준가치

본건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제반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평가방법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으며, 기준가치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2. 기준시점

본건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5년 3월 30일임.

3. 실지조사 실시기간

본건의 물리적 현황 및 시장분석 등을 위한 실지조사는 2025년 3월 30일에 실시하였음.

4. 감정평가조건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III. 기타 참고사항

1. 물적 동일성 여부 및 공부와의 차이

본건은 공부와 현황이 일치하여 물적 동일성이 인정됨.

2. 임대사항의 확인

① 미상임.

3. 기타 참고사항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I. 감정평가 대상물건의 개요

소재지	인천광역시 중구 덕교동 638	
토 지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이용상황	전
	지 목	전
	면 적	254 m ²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II.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1. 감정평가의 방법

감정평가의 방법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수익환원법 등이 있음.

2. 감정평가방법의 결정

(1) 토지의 평가

토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하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그 합리성을 비교·검토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III. 감정평가액 산출과정

감정평가액 = 토지감정평가액 (공시지가기준법 및 거래사례비교법)

1. 토지 감정평가액

(1) 대상 토지의 현황

일련 번호	소재지	면적 (m ²)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2024년 개별공시지가 (원/m ²)
1	중구 덕교동 638	254	전	전	자연녹지	맹지	사다리 급경사지	263,300

(2) 토지 감정평가 시 고려사항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3)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단가) 산정

가. 비교표준지 선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하여 비교가능성이 있는 아래의 표준지를 선정함.

일련 번호	소재지	면적 (m ²)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2025년 공시지가 (원/m ²)
A	중구 덕교동 642-2	1,719	전	전	자연녹지	세로(가)	부정형 평지	313,400

나. 시점수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지가변동률로서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함.

표준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	비 고
A 녹지	0.208	인천광역시 중구 (25.01.01~25.03.30) 2025.01.01 ~ 2025.02.28 : 0.151 2025.02.01 ~ 2025.02.28 : 0.053 $(1 + 0.00151) * (1 + 0.00053 * 30/28) \approx 1.00208$

※ 기준시점이 속한 월의 지가변동률은 미고시 상태인 경우, 최근 발표된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일수 안분하여 연장 적용함.

다. 지역요인 비교

지역요인 결정에 관한 의견	지역요인 비교치
본건은 비교표준지와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요인은 동일함.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라. 개별요인 비교

■ 농경지대(전) [일련번호1 / 표준지A]

조 건	항목	세항목	격차율	비고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0.80	본건과 비교표준지 대비 가로의 계통 및 연속성 등에서 열세함.
		농로의 상태		
자연 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대등함.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관개, 배수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재해의 위험성	수해의 위험성		
기타 재해의 위험성				
획지 조건	면적, 경사 등	면적	0.90	본건은 표준지에 비하여 면적 및 경사도에서 열세함.
		경사도		
		경사의 방향		
	경작의 편부	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보조금, 용자금 등 조장의 정도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대등함.
		규제의 정도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대등함.
		기타		
개별요인비교치 (누계)			0.72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마. 그 밖의 요인 보정

(가)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토정 30241-36538, 1991.12.28) 및 대법원판례(2003다38207(2004.05.14선고), 2002두5054(2003.07.25선고)) 등의 취지에 따라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및 지가균형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이 필요함.

(나) 인근 토지의 가격수준

구 분	주위환경	도로조건	지가수준(원/㎡)	기타
-	마을주변 농경지대	세로변	300,000-500,000	자연녹지

마시안해변과의 거리, 경사도, 인근 도로와의 접근성 등에 따른 가격차를 보임

(다) 본건 평가사례

본건의 최근 3년 이내의 평가사례는 포착되지 아니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라) 인근 평가사례

일련 번호	소재지	토지 면적(m ²)	용도지역	지목 이용상황	기준시점	평가목적	토지단가 (원/m ²)	비고
(1)	중구 덕교동 636-*	104.77	자연녹지	전 전	2023.10.18	담보	457,000	-
(2)	중구 덕교동 26*	1,392	자연녹지	답 답	2024.03.26	시가참고	399,000	-
(3)	중구 덕교동 27*	450	자연녹지	답 답	2023.04.26	담보	376,000	-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마) 인근 거래사례

일련 번호	소재지	용도지역 지목/이용상황	거래가액 (토지단가)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토지면적 건물연면적	비고
#1	중구 덕교동 634-*	자연녹지 답/전	708,000,000원 (@ 481,000원/m ²)	2022.03.16 -	1,471m ² -	-
	의견	1) 2) 토지가격 : 708,000,000원 / 1,471m ² ≒ 481,000원/m ²				
#2	중구 덕교동 605-*	자연녹지 전/전	181,500,000원 (@ 454,000원/m ²)	2024.01.25 -	400m ² -	-
	의견	1) 2) 토지가격 : 181,500,000원 / 400m ² ≒ 454,000원/m ²				
#3	중구 덕교동 40*	자연녹지 답/답	156,000,000원 (@ 453,000원/m ²)	2022.02.26 -	344m ² -	-
	의견	1) 2) 토지가격 : 156,000,000원 / 344m ² ≒ 453,000원/m ²				
#4	중구 덕교동 440-*	자연녹지 전/전	86,184,000원 (@ 378,000원/m ²)	2022.04.15 -	228m ² -	-
	의견	1) 2) 토지가격 : 86,184,000원 / 228m ² ≒ 378,000원/m ²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일련 번호	소재지	용도지역 지목/이용상황	거래가액 (토지단가)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토지면적 건물연면적	비고
#5	중구 덕교동 68*	자연녹지 답/답	390,000,000원 (@ 605,000원/m ²)	2024.06.06 -	645m ² -	-
	의 견	1) 2) 토지가격 : 390,000,000원 / 645m ² ≒ 605,000원/m ²				
#6	중구 덕교동 63*	자연녹지 전/전	342,000,000원 (@ 663,000원/m ²)	2023.06.13 -	516m ² -	-
	의 견	1) 2) 토지가격 : 342,000,000원 / 516m ² ≒ 663,000원/m ²				
#7	중구 덕교동 64*	자연녹지 전/전	203,000,000원 (@ 681,000원/m ²)	2023.06.13 -	298m ² -	-
	의 견	1) 2) 토지가격 : 203,000,000원 / 298m ² ≒ 681,000원/m ²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바) 경매 동향

용도별	인천 중구 2024년 03월 ~ 2025년 02월					
구 분	낙찰가			낙찰건		
	총감정가	총낙찰가	율(%)	총건수	낙찰건수	율(%)
답	10,770,481,000	6,650,765,180	61.7	27	6	22.2
임야	4,037,013,281	1,500,853,000	37.2	39	6	15.4
전	2,665,591,000	1,112,215,000	41.7	7	3	42.9

(출처 : 인포케어)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사)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출

① 개요 및 산식

비교표준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유사한 거래사례를 선정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산출함.

$$\text{그 밖의 요인 보정치} = \frac{\text{거래사례기준 표준지가격 (사례단가 x 사정보정 x 시점수정 x 지역요인 x 개별요인)}}{\text{기준시점 현재 표준지가격 (표준지공시지가 x 시점수정)}}$$

② 보정치 산정

< 비교표준지 A >

거래사례 기준 표준지가격 (a)	사례단가 ¹⁾ (원/m ²)	사정 ²⁾ 보정	시점 ³⁾ 수정	지역 ⁴⁾ 요인	개별 ⁵⁾ 요인	산출단가 ⁶⁾ (원/m ²)	격차율 (a/b)	보정치 결정
	481,000	1.000	1.05091	1.000	0.950	480,213		
기준시점 현재 표준지가격 (b)	공시지가 (원/m ²)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⁶⁾ (원/m ²)	1.529	1.52
	313,400	1.00208		-	-	314,052		

¹⁾거래사례 : 비교표준지A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거래사례#1을 선정함.

²⁾사정보정 : 상기 거래사례#1은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사료됨.(1.000)

³⁾시점수정(2022.03.16 ~ 2025.03.30, 중구 녹지지역) : 5.091% (1.05091)

⁴⁾지역요인 : 비교표준지A는 거래사례#1 인근지역에 소재하므로 지역요인 대등함.

⁵⁾개별요인 : 비교표준지A가 거래사례#1 대비 가로의 계통 및 연속성에서 다소 열세함.

개별요인 비교치 (농경지대(전))					격차율
접근 조건	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0.95	1.00	1.00	1.00	1.00	0.950

⁶⁾산출단가 : 원단위 미만 절사.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단가)

일련 번호	비교표준지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m ²)	시산가액 (단가)(원/m ²)	비고
	일련 번호	공시지가 (원/m ²)							
1	A	313,400	1.00208	1.000	0.720	1.52	343,698	344,000	농경지대 (전)

※ 산출단가: 원단위 미만 절사.

(4)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단가) 산정

가. 비교거래사례 선정

거래사례 선정에 관한 의견	비교 거래사례
본건의 인근지역에 위치하며,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래사례를 비교거래사례로 선정함.	#2

일련 번호	소재지	용도지역 지목/이용상황	거래가액 (토지단가)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토지면적 건물연면적	비고
#2	중구 덕교동 605-*	자연녹지 전/전	181,500,000원 (@ 454,000원/m ²)	2024.01.25 -	400m ² -	-
	의견	1) 2) 토지가격 : 181,500,000원 / 400m ² ≒ 454,000원/m ²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나. 사정보정

사정보정에 관한 의견	사정보정치
비교거래사례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보임.	1.00

다. 시점수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지가변동률로서 비교거래사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함.

거래사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	비 고
#2 녹지	1.802	인천광역시 중구 (24.01.25~25.03.30) 2024.01.01 ~ 2024.01.31 : 0.124 2024.02.01 ~ 2024.02.29 : 0.123 2024.03.01 ~ 2024.03.31 : 0.119 2024.04.01 ~ 2024.04.30 : 0.147 2024.05.01 ~ 2024.05.31 : 0.138 2024.06.01 ~ 2024.06.30 : 0.155 2024.07.01 ~ 2024.07.31 : 0.117 2024.08.01 ~ 2024.08.31 : 0.145 2024.09.01 ~ 2024.09.30 : 0.191 2024.10.01 ~ 2024.10.31 : 0.203 2024.11.01 ~ 2024.11.30 : 0.095 2024.12.01 ~ 2024.12.31 : 0.118 2025.01.01 ~ 2025.02.28 : 0.151 2025.02.01 ~ 2025.02.28 : 0.053 $(1 + 0.00124 * 7/31) * (1 + 0.00123) * (1 + 0.00119) * (1 + 0.00147) * (1 + 0.00138) * (1 + 0.00155) * (1 + 0.00117) * (1 + 0.00145) * (1 + 0.00191) * (1 + 0.00203) * (1 + 0.00095) * (1 + 0.00118) * (1 + 0.00151) * (1 + 0.00053 * 30/28) \approx 1.01802$

라. 지역요인 비교

지역요인 결정에 관한 의견	지역요인 비교치
본건은 비교거래사례의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요인은 동일함.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마. 개별요인 비교

■ 농경지대(전) [일련번호1 / 거래사례#2]

조 건	항목	세항목	격차율	비고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0.85	본건이 사례 대비 가로의 계통 및 연속성 등에서는 열세함.
		농로의 상태		
자연 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대등함.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관개, 배수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재해의 위험성	수해의 위험성		
기타 재해의 위험성				
획지 조건	면적, 경사 등	면적	0.90	본건은 사례에 비하여 형상에서는 다소 우세하나 경사도 등에서는 다소 열세함
		경사도		
		경사의 방향		
	경작의 편부	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보조금, 용자금 등 조장의 정도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대등함.
		규제의 정도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대등함.
		기타		
개별요인비교치 (누계)			0.765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바. 거래사레비교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단가)

일련 번호	거래사레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원/m ²)	시산가액 (단가)(원/m ²)
	일련 번호	토지단가 (원/m ²)						
1	#2	454,000	1.000	1.01802	1.000	0.765	353,568	354,000

※ 산출단가: 원단위 미만 절사.

(5) 시산가액 조정 및 토지 평가단가의 결정

가. 토지 시산가액(단가) 검토

일련번호	공시지가기준법 (원/m ²)	거래사레비교법 (원/m ²)	비고
1	344,000	354,000	-

나. 토지 평가단가의 결정 및 결정의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거래사레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객관성, 합리성이 인정되며,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거래사레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보다 다소 낮게 산정되어 수요성, 환가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평가목적에도 부합하는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단가)으로 평가단가를 결정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IV. 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

1. 감정평가액의 결정

본건 평가대상 부동산의 입지적 여건, 이용상황, 제반 공법상의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평가목적
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감정평가액	토 지	87,376,000
	합 계	87,376,000

결정의견	경매로서의 안정성과 환가성 등을 참작하고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및 참고가격 자료(평가사례, 인근 부동산 탐문조사에 의한 가격수준, 낙찰가율 통계분석 등)를 고려할 때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감정평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는바, 상기 평가액으로 대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	---

2. 기타 참고사항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4) 인접 도로상태
(7) 공부와의 차이 | (2) 교통상황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3) 형태 및 이용상태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중구 덕교동 소재 '용유역'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인근으로 농경지 및 임야, 단독주택 등의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은 맹지로서 차량의 직접적인 접근은 불가하며, 본건 서측 '마시란로'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대중교통상황은 다소 불편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사다리형 급경사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은 맹지로서 인접토지를 통하여 출입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5-02-14)(운북4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형도면 변경고시), 장애물제한표면구역(2012-06-11)(수평표면)<공항시설법>, 성장관리권역(2017-07-18)<수도권정비계획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7) 공부와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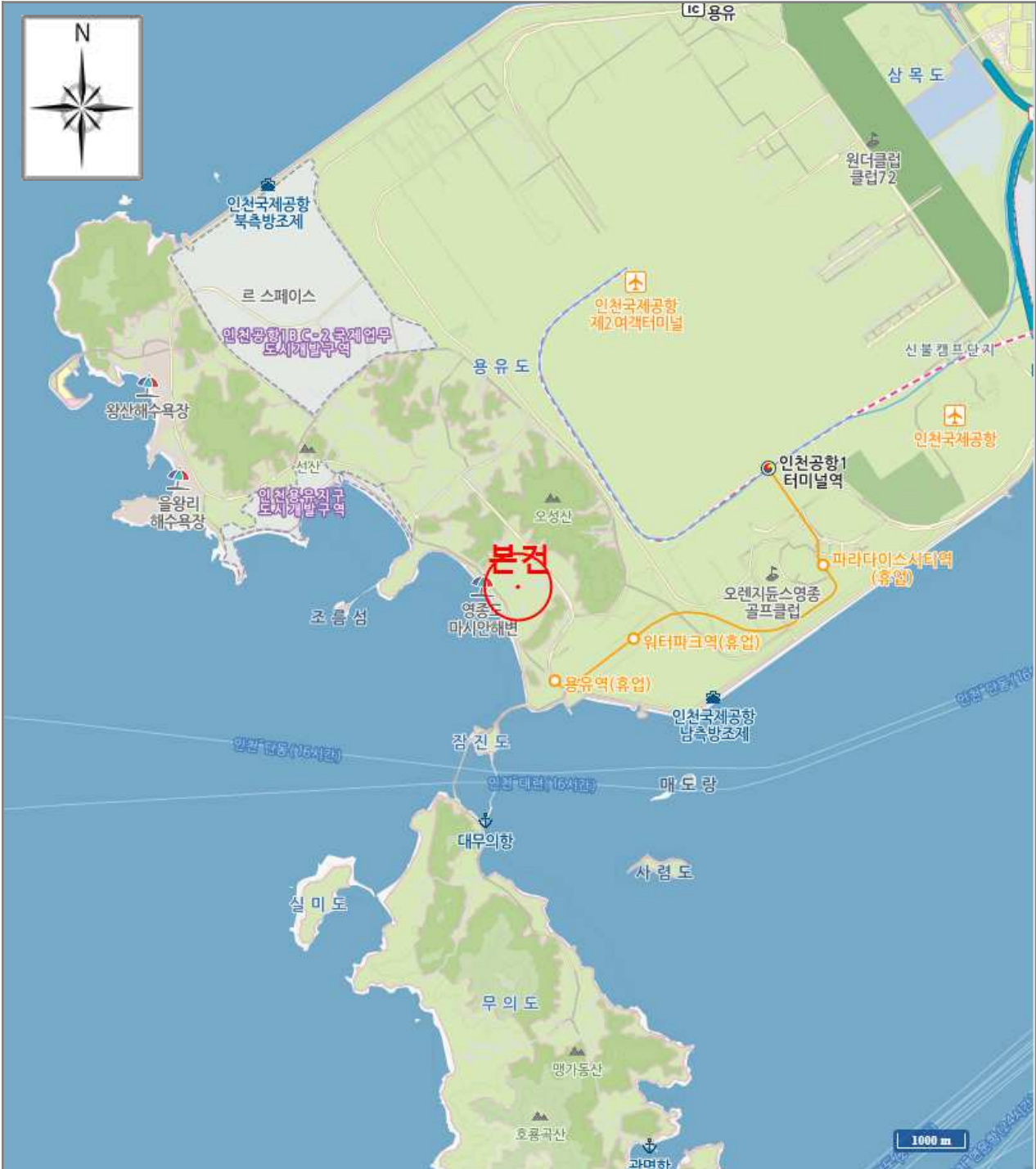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본건은 급경사지에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된 '전'임.

광역 위치도

소재지	인천광역시 중구 덕교동 638
-----	------------------



[범례]

■ 본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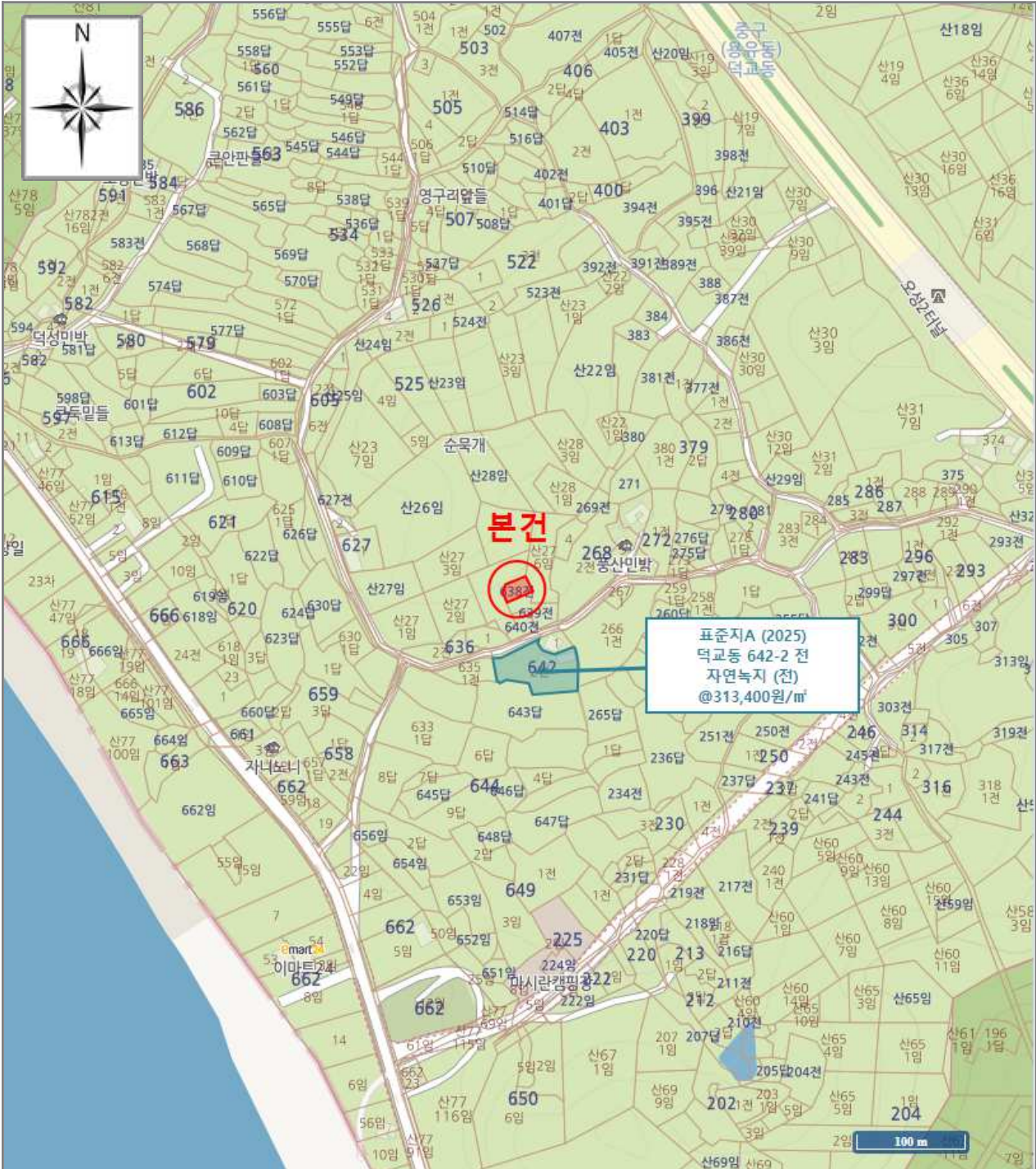
■ 표준지

■ 평가전례

■ 거래사례

상세 위치도

소재지	인천광역시 중구 덕교동 638
-----	------------------



- [범례]
- 본건
- 표준지
- 평가사례
- 거래사례

지 적 도

소재지	인천광역시 중구 덕교동 638
-----	------------------



사 진 용 지

소재지

인천광역시 중구 덕교동 638



본건 전경(동측에서 촬영)



본건 전경(북측에서 촬영)

사 진 용 지

소재지

인천광역시 중구 덕교동 638



본건 전경(남측에서 촬영)



본건 전경(동측에서 촬영)

사 진 용 지

소재지

인천광역시 중구 덕교동 638



인접토지 통한 본건 진출입로



인접토지 통한 본건 진출입로

사 진 용 지

소재지

인천광역시 중구 덕교동 638



본건 전경(남측 촬영)



도로변에 접한 주변 토지 전경

사 진 용 지

소재지

인천광역시 중구 덕교동 638



주변 도로 상황



본건 및 인접토지 전경

수수료 청구서

감정평가서번호 : YS20250324-1-001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상규 귀하

의뢰번호 : 2025타경507873

사십오만삼천이백원정 (₩453,200.-)

2025-03-24 일자 귀 제 『 2025타경507873 』 호로 의뢰하신 『 어미숙 소유물건(2025타경507873) 』 건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 되었으므로 상기 금액을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에 의거 청구하오니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내역-

과목	금액	비고
가.평가수수료	290,000	기본수수료 ≒290,000원
나.여비	110,000	
토지조사비	-	【공부발급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000 / 등기부등본 1,000 / 사진 10장
물건조사비	-	
공부발급비	2,000	
임대차조사비	-	
기타 실비	10,000	
특별용역비	-	
소계	122,000	
수수료합계(공급가액)	412,000	* 1,000원미만절사
부가가치세(세액)	41,200	
총계	453,200	
기납부 착수금	-	
정산 청구액	453,200	

※ 위 금액을 아래 계좌로 송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연송감정평가사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420-48-01127

★계좌번호★

카카오뱅크 3333-31-9117442
연송감정평가사사무소(김동열)

연송감정평가사사무소

(TEL. : 010-9459-0830 FAX. : 0505-182-3145)

회 보 서

우)2202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16 힐스테이트 송도 101동 3001호
E-Mail : yseco92@kapaland.co.kr

TEL. 010-9459-0830
FAX. 0505-182-3145

문서번호 : YS20250324-1-001호

시행일자 : 2025. 04. 01

수 신 :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상규

참 조 : 경매9계

제 목 : 감 정 평 가 회 보

1. 우리 연송감정평가사사무소의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오며, 귀 법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문서 2025.03.24자 귀 제 2025타경507873호로 의뢰하신『인천광역시 중구 덕교동 638 소재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별첨과 같이 회보합니다.

별 첨 : 1. 감정평가서 1 부
2. 청구서 1 부 끝.

연송감정평가사사무소